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박충권·조정훈·김성원

김정재 • 이인선 • 권성동

박준태 · 김승수 · 백종헌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정하는 등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해킹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에 알려 수사를 시작했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대책 수립 등의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로 하고,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56조의2(사이버공격·위협 발생 |
| | 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정 |
| | 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 |
| | 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
| |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
| | 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 |
| | 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
| |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 |
| | <u>려야 한다.</u> |
|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 <u>제56조의3</u>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
| 대응 등) (생 략) | 대응 등) (현행 제56조의2와 같 |
| | 음) |
|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 | 제56조의4(정보통신망의 사용 제 |
| 한) (생 략) | 한) (현행 제56조의3과 같음) |